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삼성생명보험㈜

2. 제재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23. 2. 1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 대상	제재 내용
보험설계사	 업무정지 180일(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) 1명 업무정지 90일(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

- □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 - 삼성생명보험㈜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2017.4.19. 물건을 옮기다 다쳐 2017.4.20. ~ 2017.5.4. 기간 중 ●●병원(광주 소재)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나, 입원 기간 중 외박을 하고 전체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.5.16. ~ 2017.7.10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◎◎◎◎보험㈜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
 - 삼성생명보험㈜ 前 소속 보험설계사 △△△(現 ㈜▲▲▲▲▲▲▲▲▲)은
 2014.7.16. ▽▽▽▽▽치과의원(성남시 분당구 소재)에서 5개의 치아에

대해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음에도,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.7.17. 보험금을 청구하여 ◀◀◀◀보험㈜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규정 >

- 1. 「보험업법」제102조의2
- 2. 「보험업법」제102조의3